

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90일
연장 대상	재난안전신기술 지정서 제 호	
	지 정 일	유효기간 만료일
기술명		
기술보유자	상호(법인명)	주소(법인인 경우 소재지)
	성명(대표자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신기술 내용 및 범위		

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.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 실적, 현장 적용 결과, 성능·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.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4.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별표 3에 따른 금액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	

(뒤쪽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